

자료 15

「도중 일본인 잠정처리의 건」의 타합사항

1940년

[훈령에 포함 시킬 사항]

「渡中 내국인 잠정처리의 건」 타합사항

• 내무성 관계

(중략)

5. 문의. 영사관 없는 지역의 군에서 특수 부녀를 초청하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답. 당해군부의 증명서에 따라 최인근 영사관의 증명서(도중사유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받는 것으로 한다.

6. 문의. 도중(渡中)사유증명서를 소지하고있는 자에 관해서는 본국 경찰서에서 다시 신원조사를 할 것 없으며 신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도중자에 관한 신원증명은 종래와 같이 실시하도록 조치할 것.

(중략)

9. 특수부녀, 가사용인 등은 「정주(定住)하기 위해」로 할 것.

• 육군성 관계

1. 만주국의 도중(渡中) 취급 진중 특례의 범위에 관해 재고 바람.

2. 군속, 군 고용인의 정의 여하.

3. 현지 헌병대에서 군속, 군 고용인 아닌자에 대해(주로 특수 부녀) 증명서를 발급하여 이것으로 도중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소정대로 영사관 발급의 증명서에 따르도록 조치 바람.

• 무(拓務)성 관계 (약)

자료 16

도중사유증명서 등의 취득불능으로 인정되는 對岸 지역의 도항자 취급에 관한 건

1940년

1940년 9월 2일

대만총독부 외사부장 千葉泰一

외무성 미국국 제3과장 眞木薫 귀하

外1제1, 162호의 1

도중(渡中)사유증명서 등의 취득불능이라고 인정되는 대안 지역의 도항자 취급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하여 高雄州 지사로부터 별지 갑호 사본과 같이 조 회가 있었기에 이런 종류의 도항자의 취급 범주에 관해서는 육해 군 측의 증명서에 따라 최인근의 영사관 경찰서로부터 도중사유 증명서를 취득하라는 귀관으로부터의 지시도 있었기에 본 건 도 항자에 대해서도 광둥(廣東)총영사관 발급의 도중사유증명서를 제출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지만 본 건 위안소 종업원의 도항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본 건에 한해서 허가토록 하라는 취지를 별지 을호 사본과 여히 高雄州 지사 앞으로 회답 해 놓았기에 양지하옵기 이에 통보함.

갑호 寫

高警高秘外 제5692호

秘 1940년 8월 23일

외사부장 귀하

도중사유증명서의 취득불능으로 인정되는 대안 지역의 도항
자 취급에 관한 건

본적 (臺北市×町×××)

주소 (高雄市×町×××)

당 22세

상기자 명의인 이웃 남편 _____ 되는 자와 같이 광둥성 흥현
(廣東省欽縣)에서 미나미(南)중국과건군 시오다(塩田)부대 하야
시(林)부대 전속 위안소를 경영, 목하 동 군을 따라 광서성 남령
(廣西省南寧) 부근에서 취업 중인 바 금번 작부 연행의 목적으로
6월 27일부 상기 하야시(林)부대장 발급증명서(별첨 제1호) 및
동일부 동지 현병분견대장 발급의 도항증명서(상 제2호) 및 동월
28일부 작부초청증명서(동 제3호)를 휴대 귀대(歸臺)하여 재도항
을 위해 본명 등 2명 및 연행해야할 6명의 도항증명서 발급의 신
청이 있었는데 중국 도항에 관해서는 금년 5월 13일부 總外 제
112호는 「중국 도항 내국인의 취급 수속에 관한 건」에 따라 일반
인은 일률적으로 현지 영사관경찰서 발급의 도중(渡中)사유증명
서를 필요로하게 돼 있으나 본건 영업자와 같은 경우는 영사관경
찰서와는 매우 먼 지역에 있고 또 영사관에서도 조사불능의 지역
으로 사료 되는 것으로써 단시일 내에 소정 증명서의 취득이 불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며, 설사 소정 증명서의 발급이 있었다하더
라도 상기의 이유 때문에 단순히 형식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도항자의 신원, 목적 기타가 확실하여 도중 시키더라도 무방한 자
이며 특히 본건과 같은 특수영업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는 소속 부대장 또는 관할 현병대장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도항시키는 것이 가장 실제적 처리라고 사료되는 바 본건 처리에
관해 어떤 회답 있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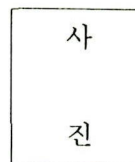
상기 조회함.

덧붙여서 광둥(廣東)영사관에서는 금년 5월 20일 이후에 관하
체류자의 귀대(歸臺)에 있어 본국인에게는 신분증명서로 대신하
려는 의향인 것 같은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상기는 전기 총무
장관 통첩의 취지 및 취급 방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되어 취
급에 관해 아울러 배려있으시기 바람.

제1호

寫

證 明 書



당 22세

상기는 당 부대 부속 위안소 경영자로서 이번 위안부 연행을
위해 귀대(歸臺)한 것이다.

따라서 위안부는 당 부대 위안을 위해 반듯이 필요한 것으로써
이의 도항에 관해서는 아무쪼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 바람.

상기 증명함.

1940년 6월 27일

南中과건 塩田兵團 부대장 林義秀 林部隊
長之印

제 2 호

渡 航 證 明 願

本 籍 [臺北州 臺北市×町××番地]

現住所 [廣東市 欽縣 奇靈圩 蓬來慰安所]

職氏名 慰安所業

當22年

1. 渡航地 臺灣, 高雄

2. 目 的 慰安婦 招致를 위하여

3. 期 間 自1940年 6月 27日 至 1940年 9月 26日

4. 出發地 欽 縣

出發月日 1940年 6月 30日

5. 其 他

右와 같이 도항하고자 하오니 증명하여주기 바랍니다.

1940年 6月 27日

右出願人 ———

欽州憲兵分遣隊長 足立茂一 귀하

欽憲警 第466號

右證明함

1940年 6月 27日

欽州憲兵分遣隊長 足立茂一

欽州憲兵分
遣 隊長印

제 3 호

招 致 證 明 願

本 籍 [臺北市 (以下略)]

住 所 [高雄市××町×丁目××番地]

職 業 芸 者

氏 名

[大正十一年×月×日生]

本 籍 [臺中州 (以下略)]

住 所 [高雄市××町×丁目××番地]

職 業 酌婦

氏 名

[大正十四年×月×日生]

本 籍 [臺北州 (以下略)]

住 所 [高雄市××町×丁目××番地]

職 業 妓生

氏 名

[大正十五年×月×日生]

本 籍 臺北州 (以下略)]

住 所 [高雄市 町×丁目××番地]

職 業 酌婦

氏 名

[大正十三年×月×日生]

本 籍 [臺中州 (以下略)]

住 所 [高雄市××町×丁目××番地]

職 業 酌婦

氏 名

[大正十三年×月×日生]

상기자는 군위안소 작부 취업을 위하여 초치코저 하오니 증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0年 6月 28日

右出願人 本籍 [臺北市×町××番地]

現住所 [廣東省欽縣奇靈圩]

職 業 蓬萊慰安所

氏 名

當22歲

欽州憲兵隊長 足立茂一殿

欽憲警 第468號

右證名함

1940年 6月 28日

欽州憲兵分遣隊長 足立茂一

欽州憲兵分
遣隊長 印

1940년 9월 2일

臺灣총독부 외사부장 千葉秦一

高雄州 지사 귀하

外1 제1, 162호

渡中사유증명서 등의 초치 불능으로 인정되는 대안 지역의
도항자 취급에 관한 건

본건에 관하여 금년 8월 23일부 高警高秘外 제5692호로써 조회
하신 취지는 잘 승지하였음.

이런 종류의 도항자의 취급 범위에 관해서는 금년 6월 8일부
외1 제662호의 3으로써 통보한 바 있지만 본건 위안소 총업원의
도항은 시급을 요하는 것일뿐 아니라 귀관이 알려오신 형편은 지

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특별히 본건에 한하여 도중(渡中)사유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하야시(林)부대장의 발급에 관련된 증명
서로써 출원토록 하여 신원, 목적 등을 조사한 결과 확실하므로
소정증명서를 발급하여도 무방하겠기에 이에 회답함.

따라서 광동성(廣東省)총영사관 발급에 관련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재도항 하려는 본토인에 대해서는 새로이 신분증명서를
취득 함이 없이 도항시키고 본토인에 대한 동관(同館)발급의 체
류증명서는 금번의 도중(渡中)사유증명서와 동일효력을 가진 것
으로 간주하여 조치토록 바람.

자료 17

주 상해 中支 경무부장 사무취급 堀內干城
도중사유증명 및 신분증명 사무의 취급방
식에 관한 건

1941년 6월 16일

中支警三機密合 제152호 1941년 6월 16일

주 상해 中支 경무부장 사무취급 堀內干城

수신선은 말미 기재와 같음

도중사유증명 및 신분증명 사무의 취급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하여 사무간소화의 견지에서 하기 방법에 따라 처리
함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 귀 관할 경찰관으로 하여금 실시
토록 시달할 것을 이에 통첩하는 바이다.

기

1. 별지 제1, 도중 사유와 신분증명 출원 주의(이하 출원주의로
칭함)를 소재지 신문에 발표하거나 민단 기타 민간 여러 단체

로 하여금 일반 거류민에게 주지 시키도록 조치 함과 동시에
군 기타 관공서에 통보할 것.

(후략)

별지 제1

도중(渡中)사유와 신분증명 출원주의 (약)

[극비]

별지 제2

도중사유증명 및 신분증명발급 담당계원의 주의사항

1. 일반적 주의사항

- ① 신청 주의서에 열기한 사항 및 소정 조건을 구비했으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할 것.
- ② 군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종부녀 및 재중 상사에서 고용관계가 확정된 자와 가사사용인(가정부, 유모등)은 극단적으로 제한하지 말 것.
- ③ 증명서 신청에는 본인이 직접 출두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 또는 특히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인이라도 상관 없음(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관해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지시토록 한다).

(중략)

3. 신분증명에 대한 주의사항

- ①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일시 귀국한 자의 증명서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 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증명서 끝머리에 기재하여 도중(渡中)시킬 수 있는 바 발급에 있어 이 취지를 지시할 것.
- ② 15세 미만의 피동반자는 신분증명서에 병기시키고 또 사진은 이를 생략해도 무방함.

③ 신청서를 접수 했을 때에는 관내 체류자 여부를 충분히 조사할 것.

④ 체류신고를 제출하고 3개 월을 경과하지 않은 자 및 1년에 2회 이상의 신청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말 것. 단 공공 단체의 대표자 및 회사, 은행등의 과장 이상으로서 공무를 위해 귀국할 경우는 차한에 부재함.

기생, 작부, 기타 특수부녀에 대한 신분증명서는 6개 월 이상 체류한 자에 한하여 발급할 것.

전기 2항의 경우라 할지라도 부득이한 사정(부모, 형제, 자매의 위독, 관혼, 장례 등의 경우)이 있을 때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음.

2.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

6번

자료 18

臺灣총독부 蜂谷噫雄 외사부장/東郷茂德 외무대신
남양방면 점령지에서의 위안소 개설에 관
한 건/남방방면 점령지에서의 위안부도항 방
식의 건

1942년 1월 10일/1월 13일

秘

昭和17 964 略 臺北 1월 10일 오후 발

南, 米

本省 10일 오후 착

蜂谷 외사부장

東郷 외무대신

제10호

남양방면 점령지에서의 위안소 개설에 관한 건

남양방면 점령지에 있어서 군부 측의 요구에 따라 위안소 개설을 위하여 도항 하려고 하는자(종업원을 포함)의 취급 방식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 있기 바람.(끝)

1942년 1월 14일 오후 5시 35분 발

외무대신

臺灣총독부 蜂谷 외사부장

남방방면 점령지에서의 위안부 도항 방식의 건

제6호

外機密

귀전 제10호에 관해

이런 종류의 도항자에 대하여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불미스러운바 군부의 증명서에 의해 군용선으로 도항 시키기 바람.

자료
19

臺灣軍 기안

남방과전 도항자에 관한 건

1942년 3월

남방과전 도항자에 관한 건

기안청 臺灣軍

부관으로부터 臺灣軍 참모장 앞

返電案(암호)

陸亞密電

3월 12일부 臺電 제602호의 건 인가됨 의명

158 자료집 • 종군위안부

陸亞密電 188 1942年 3月 16日

秘電報譯

3月 12日 오후 19시 30분 발

오후 22시 40분 착

발신자 臺灣軍사령관

大臣宛

臺電 第602號

陸密電 第63號에 關하여 보루네오行 慰安土人 50名 가능한 한 파견토록 南方總軍으로부터 요구해왔기 陸密電 第623號에 따라 憲兵調査選定한 下記 經營者3名 渡航認可 있도록 신청함.

下記

愛媛縣越智郡 ——— 臺北州基隆市日新町2의6 ——— 42歲,

朝鮮全羅南道濟州島 ——— 臺北州基隆市義重町4의15 ——— 35歲

高知縣長岡郡 ——— 高雄州潮州郡潮州街267 ——— 51歲

終

자료
20

臺灣軍 참모장

臺電 제935호

1942년 6월 13일

秘電報譯

6월 13일 오후 11시 15분 발

6월 13일 오후 시 분 착

발신자 臺灣軍 참모장

부관 앞

臺電 제935호

금년 3월 臺電제602호 신청 陸亞密電 제188호 인가에 따른 보

제2부 일본·조선·대만에서의 종군위안부의 징집과 도항 159